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공사  
(공사설명서)

2008. 5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목 차

I . 공사설명서	-----	1
II . 공사시방서	-----	(별책)
III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1
IV . 예정공정표	-----	13
V . 동원인원계획표	-----	15

# I. 공 사 설 명 서

## 1. 목 적

본 과업은 관광시민 1,200만명 유치 및 각종마라톤 대회를 위한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코자 함.

## 2. 공사위치

- 공 사 명 :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지하통로 연장개설공사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운동장 북문~한강(잠실지구)

## 3. 공사개요

- 연 장 : L = 32m, B = 20.0m
- 폭 원 : B = 20m(지하연결통로 개설B20m x H3m x L32m)

가. 토 공 : 1 식  
나. 배 수 공 : 1 식  
다. 구 조 물공 : 1 식  
라. 포 장 공 : 1 식  
마. 부 대 공 : 1 식

## 4. 골재원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잡석, 모래, 자갈 : 현장도착도

## 5. 주요자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18- 8	M <sup>3</sup>		현장도착도
	25-18-12	M <sup>3</sup>	232	"
	25-24-15	M <sup>3</sup>	2,060	"
연 강	D-10	ton	31.467	하치장상차도
	D-16	ton	53.720	"
	D-19	ton	42.479	"
	D-22	ton	22.725	"
	D-25	ton	65.325	"
	D-29	ton	72.527	"
	D-32	ton	58.777	"
계	ton	347.020		
아 스 팔 트	RSC-3,4	D/M	256	최기역레일도
아 스 콘	표층 (#78)	TON	75	"
	기층 (#467)	TON	112	"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600m/m	본	11	현장도착차상도
시 멘 트	분 말	ton		도 착 도
	40 kg/포	대	1,554	"
모 래		M <sup>3</sup>	140	도 착 도
자 갈	(φ13m/m)	M <sup>3</sup>		"
보 조 기 층	(φ40m/m)	M <sup>3</sup>	200	"
동 상 방 지 층	(φ75m/m)	M <sup>3</sup>	200	"
잡 석	(φ40m/m)	M <sup>3</sup>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250×1,000mm	M	64	현장도착도
도로경계석(화강석)	150×150×1,000mm	M	3	"
보 도 블 러	T=20mm	M <sup>2</sup>	66	"
우 레 탄 포 장	칼라	M <sup>2</sup>	900	
육 갑 문(기계)	W=9.25 * H=3.0	조	2	

##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 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 2)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5)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7. 설 계 적 용 기 준

- 1) 환 율 : 2008년 1월 2 일 현재 (매매기준율 기준)
- 2) 자 재 시 세 : 2008년 4월 기준
- 3) 노 임 : 2008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적용
- 4) 실 적 공 사 비 : 2008년 상반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적용

## Ⅱ. 공 사 시 방 서 ( 별 책 )

#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관서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IV. 예 정 공 정 표

## IV.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월 별 보 활 (%)	공 사 기 간 ( 3 개월 )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토 공	25.4		3.0	3.0	3.2	3.2	3.4	3.4	3.2	3.0	
2. 배 수 공	1.2				0.3	0.3	0.3	0.3			
3. 구조물공	71.7		10.2	10.3	10.3	10.3	10.3	10.3	10.0		
4. 포 장 공	1.3				0.3	0.4	0.4	0.2			
5. 부 대 공	0.4	0.04	0.04	0.04	0.05	0.05	0.05	0.05	0.04	0.04	
월 계	100	0.04	13.24	13.34	14.15	14.25	14.45	14.25	13.24	3.04	
누 계	100	0.04	13.28	26.62	40.77	55.02	69.47	83.72	96.96	100	



# V. 동원인원계획표

## V. 동원인원계획표

공 종	월 별	공 사 기 간 ( 90일)								비 고	
		10 일	20 일	30 일	40 일	50 일	60 일	70 일	80 일		90 일
보 할		1.0	13.0	13.0	14.1	14.2	14.4	14.2	13.1	3.0	
보통인부		16	212	212	230	232	235	232	214	49	1632
특별인부		1	15	15	17	17	17	17	15	4	118
계		47	386	386	386	511	518	499	329	75	
누 계		47	433	819	1,205	1,716	2,234	2,732	3,062	1,750	